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12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병기 · 강득구 · 강선우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홍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김병주 · 김상욱 · 김성환
김성희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김원이 · 김 윤 · 김윤택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김 현 · 김현정 · 남인순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중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박 정 · 박정현 · 박주민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현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오기형 · 오세희 · 위성곤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균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이광희 · 이기현 · 이병진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현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황희의원(166인)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포함한 30명”을 “2명을 포함한 35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3. 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u>국가통계위원회</u>)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소속으로 <u>국가통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u>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 ----- - <u>국무총리</u> 소속으로 <u>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u> ----- -----.
1.·2. (생 략)	② ----- -----.
<u><신 설></u>	1.·2. (현행과 같음)
	3. 통계와 「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 <u>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u> 」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u>1명</u> 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위원장이 된다.	③ ----- <u>2명</u> 을 포함한 <u>35명</u> ----- --- <u>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